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6
----------	-----

제출년월일 : 2000. 11. 10.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파주시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자격 요건중 본적지 및 거주지 등의 제한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 수상자를 분야별 5명에서 1인으로 조정 하는등 명실상부한 파주시의 최고 권위 있는 상으로 관리·운영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문화상 수상인원을 학술·예술·교육·지역개발·체육등 5개부문의
로 각각 1명씩 수상하던 것을 이를 통합하여 1명을 수상자로 선정
하도록 함(안제2조)

나. 문화상 수상후보자는 누구나 추천이 가능 하도록 하고 수상후보자가 없을 경우 심사위원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제4조)

다.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본적 및 거주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문화상 수상한자는 재 수상을 할수 없도록 함(안제5조)

라. 문화상 심사위원은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되도록 함.(안제6조제2항)

파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문화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문화상 수상대상자) 문화상 수상인원은 1인으로 하며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자
2. 시의 명예를 빛낸자
3. 시의 발전에 기여한 자
4. 학술·교육·지역사회개발등에 기여한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누구나 가능하며 수상후보자의 추천방법 및 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심사위원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상후보자) ①문화상 수상후보자는 제2조 각호에서 정한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문화상을 수상한 자는 재 수상을 할 수 없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①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촉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③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0조(현지확인 및 업무협조) 시장은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실.과.소		문화체육과 ☎940-4351
입 안 자	문화체육과장	박 제 홍
	문화예술담당	신 동 주
	담 당 자	성 동 현

파주시 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사	유
<u>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문화상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u> 1. <u>학술부문 1명</u> 2. <u>예술부문 1명</u> 3. <u>교육부문 1명</u> 4. <u>지역사회개발부문 1명</u> 5. <u>체육부문 1명</u>	<u>제2조(문화상 수상대상자) 문화상 수상인원은 1인으로 하며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u> 1. <u>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자</u> 2. <u>시의 명예를 빛낸 자</u> 3. <u>시의 발전에 기여한 자</u> 4. <u>학술·교육·지역사회개발등에 기여한 자</u>	<u>제2조(문화상 수상대상자) 문화상 수상인원은 1인으로 하며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u> 1. <u>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자</u> 2. <u>시의 명예를 빛낸 자</u> 3. <u>시의 발전에 기여한 자</u> 4. <u>학술·교육·지역사회개발등에 기여한 자</u>	○ 문화상 수상자를 1인으로 조정하여 파주시의 최고 권위 있는 상으로 격상 운영 - 수상자 또한 대내외적으로 손색 없는 상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	○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개정한 것이며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훌륭한 수상 후보자가 발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심사위원이 추천가능 토록 규정(추천한 수상후보자의 심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성 유지)	○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개정한 것이며 본 조례 목적에 부합되고 파주발전에 명예를 빛낸 인물도 수상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함.
<u>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누구나 가능하며 수상후보자의 추천방법 및 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②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심사위원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u>	<u>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누구나 가능하며 수상후보자의 추천방법 및 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②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심사위원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u>	○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개정한 것이며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훌륭한 수상 후보자가 발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심사위원이 추천가능 토록 규정(추천한 수상후보자의 심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성 유지)	○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개정한 것이며 본 조례 목적에 부합되고 파주발전에 명예를 빛낸 인물도 수상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함.	○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개정한 것이며 본 조례 목적에 부합되고 파주발전에 명예를 빛낸 인물도 수상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함.
<u>제5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3년이상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파주시인자 또는 관내 직장에 계속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다만, 전직자는 전직후 3년이상 파주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u> <u><신 설></u>	<u>제5조(수상후보자) 수상후보자는 제2조 각호에서 정한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u> <u>②문화상을 수상한 자는 재 수상을 할 수 없다.</u>	<u>제5조(수상후보자) 수상후보자는 제2조 각호에서 정한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u> <u>②문화상을 수상한 자는 재 수상을 할 수 없다.</u>	○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개정한 것이며 본 조례 목적에 부합되고 파주발전에 명예를 빛낸 인물도 수상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함.	○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개정한 것이며 본 조례 목적에 부합되고 파주발전에 명예를 빛낸 인물도 수상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함.	○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개정한 것이며 본 조례 목적에 부합되고 파주발전에 명예를 빛낸 인물도 수상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함.	○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개정한 것이며 본 조례 목적에 부합되고 파주발전에 명예를 빛낸 인물도 수상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함.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①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문화상 심사의 형평성 유지	
<신 설>				②의출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상 시상과 동시 동 해출된다.	○문화상 심사의 효율성 제고	
<신 설>				③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문화상 심사의 효율성 제고	
<신 설>				제10조(현지확인 및업무협조)시장은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공적사실 확인여부의 필요성	